

## 「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」 의원발의안 수정조항 대비표

| 교육감 발의안(2012.10)   | 장영수의원 발의안(2013.2)   |
|--|---|
| <p><b>제5조(차별받지 않을 권리)</b> ① 학생은 성별, 종교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언어, 장애, 용모 등 신체조건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경제적 지위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<u>성(性)적 지향</u>, 성별 정체성, 병력(病歷), 징계,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.</p> | <p><b>제5조(차별받지 않을 권리)</b> ①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u>성</u><br/> <u>(性)적지향(삭제)</u>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|
| <p><b>제6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</b>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, <u>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피해자가</u>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 | <p><b>제6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</b> ③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<u>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피해자가(삭제)</u>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7조(안전에 대한 권리)</b>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<u>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</u> 노력하여야 한다.</p>   | <p><b>제7조(안전에 대한 권리)</b> ①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br/> <u>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</u><br/> <u>위하여(삭제)</u>-----</p>  |

제9조(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) ③ 정규교과이외의 교과활동시간에 정규교과 진도를 나가서는 아니 된다

④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10조(휴식을 취할 권리)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② 여학생은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

제12조(사생활의 자유)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정보에 관한 권리)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) ③, ④ 삭제

제10조(휴식을 취할 권리) ③ 삭제

제11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② 삭제

제12조(사생활의 자유) ③ 삭제

제14조(정보에 관한 권리) ③ 삭제

제15조(양심·종교의 자유)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표현의 자유)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 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자치활동의 권리) ⑤ 6.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·교류·협의를 권리

제19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.

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5조(양심·종교의 자유) ③ -----  
----- 및 대체과목  
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(삭제)  
-----

제16조(표현의 자유) ⑤ 삭제

제17조(자치활동의 권리) ⑤ 6. 삭제

제19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 ②, ④ 삭제

제22조(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)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37조(실천계획의 작성)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3조(학생인권옹호관)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제22조(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) ③ 삭제

제37조(실천계획의 작성) ②-----  
----- 2년 단위로(수정)  
-----

제43조(학생인권옹호관) ③ -----  
2년으로(수정) -----